



제 438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농어업인 직업병 정의 및 관련 절차 규정〉

■ 문금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9735호)

2026.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농어업인 직업병’의 정의 및 인정절차 신설	3
2. ‘농어업인 직업병’ 관련 제도 정비	10
3. 농어업인 직업병 지원사업의 신설	13
IV . 입법의 재정영향	1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문금주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6. 7. 3.
3. 회 부 일 : 2026. 7.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은 장시간의 옥외 작업, 농약·분진 등 유해물질에의 상시적 노출,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장기간의 노출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는 직업병에 대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체계적인 예방·관리 및 지원 제도는 미비한 실정임.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농어업인은 직업병의 진단·치료·재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그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농어업인 직업병 관리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가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게 진단·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을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1. ‘농어업인 직업병’의 정의 및 인정절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u>사망을 보상하기 위한</u>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농어업 종사자를 보호하고</u> ,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사망을 보상하고 농어업인 직업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한</u> ----- ----- --- <u>농어업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4의2. “농어업인 직업병”이란 농어업 <u>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u>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2.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③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
-----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농어업인 직업병을 포함한다)-----

-.
-

제8조의2(농어업인 직업병의 인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그 인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질병의 종류 및 인정기준에 해당할 것

2. 해당 질병이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인 직업병의 진단 및 인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보건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인정 절차·방법 및 자문기구의 구성·운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u>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u>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u>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안전재해 및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실태조사</u>----- --. ③·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을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농어업작업과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농업은 작업 과정에서 농약 등 유해물질, 농기계, 반복적인 신체작업 등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광업·건설업과 함께 위험성이 높은 산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또한 농촌진흥청의 농업인과 비농업인 질병 유병률 비교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연령 차이를 보정한 후에도 농업인은 비농업인보다 정신·행동장애, 신경계통 질환, 근골격계 질환, 손상·중독 등의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빈도 질환 연령표준화 유병률(%,'20.)]

질 환 분 류	농 업 인			비농업인			비 율	
	남성(A)	여성(B)	전 체	남성(C)	여성(D)	전 체	(A/C)	(B/D)
							×100	×100
정신 및 행동 장애	17.0	28.2	21.1	15.4	25.7	19.5	110.4	109.7
신경계통질환	19.9	29.4	23.1	18.1	27.1	21.5	109.9	108.5
순환계통질환	44.8	48.0	46.4	44.8	45.4	45.6	100.0	105.7
호흡계통질환	43.1	53.7	46.4	43.0	53.0	46.4	100.2	101.3
소화계통질환	72.3	79.4	74.4	72.1	79.2	74.5	100.3	100.3
피부피하조직질환	34.9	42.2	37.1	34.2	39.9	36.0	102.0	105.8
근골격계 질환	54.4	68.3	58.9	50.6	65.5	55.8	107.5	104.3
손상, 중독 및 외인	34.0	36.8	34.8	30.0	34.5	31.5	113.3	106.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질병유병률 비교 연구 결과(농진청, '22.)

이처럼 농업인은 작업 특성상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고 재해 및 질병 부담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농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장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을 직업병으로 정의하고 그 종류와 인정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농어업인 직업병’은 현행법상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개념 및 인정절차를

신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현행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에는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 포함되므로,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장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직업병도 이에 포함될 수 있음.

특히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와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은 이와 별도로 직업병의 종류와 인정기준을 고시로 정하고 별도의 인정절차까지 두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질병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인정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더욱이 개정안은 농어업인 직업병을 ‘장기간에 걸쳐’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행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보다 그 범위가 제한적임. 이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라도 장기간 노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에는 해당하지만 농어업인 직업병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농식품부는 현행법 규정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낮을 것이라는 입장임.

2. '농어업인 직업병' 관련 제도 정비

개정안은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심의회 심의사항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예방·관리 및 의료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실태조사의 대상에 농어업인 직업병을 포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 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u>4의2. 농어업인 직업병의 예방·관리 및 의료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생략)	제15조(통계의 수집·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	② -----

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u>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u> 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 ----- <u>안전재해 및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u> <u>한 실태조사</u> ----- --. ③·④ (현행과 같음)
--	---

현행법은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심의회가 보험금의 종류와 보장범위, 보험료율과 보험료, 보험사업의 재정지원 등 보험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는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이 포함되어 있음.

농어업인 직업병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하는 질병으로, 직업병으로 인정되는 질병의 범위와 인정기준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금 지급대상 및 보장범위와 직접 관련될 수 있음. 따라서 직업병의 예방·관리 및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대상으로 명시하는 것은 직업병의 특성을 보험사업의 운영에 반영하고 관련 지원의 적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직업병의 발생 규모와 질병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보험의

보장범위와 예방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재해 실태조사에 직업병을 명시하려는 취지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추가하려는 사항은 현행 심의 및 실태조사 대상에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심의회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한 보험금의 종류와 보장범위 등을 심의하고 있고,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포함되어 치료급여금 등의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직업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별도의 심의사항으로 추가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또한, 현행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실태조사에서도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을 조사하고 있으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농어업인의 질환 현황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직업병의 발생현황을 파악하려는 개정안의 목적은 현행 조사체계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농식품부는 현행법상 규정된 조항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행법 제15조 및 ‘농어업인삶의질법’(제14조제2항 ‘농업인 질환 현황 조사’)에 근거하여 농업인에게 자주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심혈관계질환, 피부질환 등 농업인 업무상 질병을 조사하고 있어 입법의 실익이 낮다는 입장임.

3. 농어업인 직업병 지원사업의 신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사업에 농어업인 직업병의 예방·조기진단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 직업병의 진단·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 및 직업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u><신설></u> 5. (생략) ② (생략) <u><신설></u>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농어업인 직업병의 예방, 조기진단 및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u>제16조의4(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의료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2에 따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게 그 직업병의 진단·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 직업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하</u>

	<u>여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다.</u> <u>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비 및 건강검진 비용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보호·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을 통해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¹⁾. 이 중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임.

1)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2. ~9. (생략)

②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의료비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직업병은 장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특성상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치료뿐만 아니라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은 질병이 발생한 이후의 의료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직업병의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검진까지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직업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음.

다만, 개정안에서 지원하려는 직업병의 진단·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는 농어업인안전보험의 상해·질병 치료급여금으로 이미 보장되고 있어, 보험가입자에 대한 별도의 의료비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보험가입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지원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업병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농식품부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사고 발생 시 회복을 위한 보상 체계(농업인안전보험)는 구축되어 있으므로, 진단·치료·재활 등에 대한 규정 마련 필요성은 낮으나,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근거 마련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임.

IV. 입법의 재정영향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²⁾

문 의 처
02)6788-5415

2)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29)